Issue Paper

2009. 8. 10.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목차

요약

Ⅰ. 추진경과 및 의의

Ⅱ. CEPA의 주요 내용 및 평가

Ⅲ. 예상 경제효과

Ⅳ. 시사점 및 활용방안

작성 : 정무섭 수석연구원(3780-8069)
moosup.jung@samsung.com

감수 : 박번순 연구전문위원(3780-8243)
pbs21@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Executive Summary 》

3년 넘게 끌어왔던 한-인도 CEPA 협상이 2009년 8월 7일 정식 서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한국 국회의 비준만 통과되면 발효가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의 사실상 타결은 작년 9월에 이루어졌으나, 인도내 선거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연기된 측면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금액기준으로 한국의 수출품의 38.4%(15억 달러), 수입품의 63.0%(12억 달러)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수출품목의 3.9%(202개), 수입품목의 60.6%(6,824개)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5년 또는 8년 안에 한국의 수출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537개 품목(67.6%)이며, 수입품목 중 5년 또는 8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360개 품목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 중 '자동차 기타 부분품'과 경유(제트유)를 제외한 8개 품목은 즉시 또는 8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인도의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문화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한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되어, 한국시장으로의 인도인력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의 인도인력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며 쟁점이 되었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미양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투자부문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도시장을 개방했으며, 투자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주로 한국기업들의 현지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이번 한-인도 CEPA의 경우 한국-아세안 등과의 FTA와 비교할 때, 양허수준이나 효력발생 속도 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먼저 FTA를 체결한 점은 시장선점의 이점을 누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와의 CEPA는 거대 인구를 가진 고성장 신흥시장과 맺은 처음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경제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흥시장진출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기업과 정부는 인도경제와의 기존의 산업구조적인 보완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생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는 무역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제조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 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한국기업들은 인도를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시장진출을 위한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인도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Ⅰ. 추진경과 및 의의

성공적인 한국-인도 CEPA 서명

□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공식적으로 서명

-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

- 2008년 9월말 협상 타결시 양국은 11월말 가서명, 12월말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나 지체되다 2009년 8월 7일 공식 서명
  - · 법률 검토 작업과 인도의 총선 등으로 시간 소요
  - · 한국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만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 발효가능

□ 인도는 FTA 협상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서 한국-인도 CEPA는 2년 반만의 협상 타결과 이후 거의 1년 만에 정식 서명

-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방문시 양국은 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합의

- 2006년 3월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을 개최(뉴델리) 한 이후 2008년 9월까지 12차의 협상과 2 차례의 중간회의 개최

□ 인도는 제조업경쟁력이 낮고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지만 한국은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

- 인도가 개방을 표방하고 있으나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정치권의 국내인 해관계자의 설득능력 미약으로 협상에 난관을 겪음[1)]
  - · 인도의 아세안 및 일본과의 FTA 협상도 예정기한을 훨씬 넘어 타결되었거나 협상 중

1) 인도는 제조업비중이 낮고 사회주의적-수입대체형 공업화의 전통이 상존하여 제조업 경쟁력이 낮음

- 재계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서 정치권이 개방정책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에서 또 한 번의 귀중한 경험을 축적
  · 인도는 민주주의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크면서 협상 진행 곤란

<인도와의 FTA 협상의 어려움>

▶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들은 인도의 속도 지체에 모두 상당한 인내를 해야 함
· 인도-아세안 FTA : 2003년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프레임웍 협정"을 맺어 2005년 6월까지 FTA의 상품교역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2008년 8월 대략적인 협상을 타결, 국내 반대로 2009년 10월에야 서명될 예정
· 일본-인도 FTA : 2007년 1월 협상 개시후 2008년 10월까지 10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음
· 중국-인도 FTA : 2005년 4월 공동연구를 선언했으나 2008년 8월 공동연구를 종료했을 뿐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잠재적 경제대국의 시장선점

□ 인도는 장차 중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가장 강력한 잠재국

- 인도는 인구 11억 명 이상의 대국이며 시장환율 기준 국민총생산(GNI)은 1.2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2.2%
  · 구매력 평가 기준의 소득은 세계 소득의 4.7%를 차지

- 2000년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중국과 함께 향후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시장
  · 2003~2007년 기간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9%로 중국의 1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적인 수준

- 잠재력이 높은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기회의 땅에 발을 디딘 셈
  - 장기적으로 인도의 성장잠재력은 중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

인도 및 주요국의 경제규모 비교 (2007년 기준)

	인구(억명)	시장환율 GNI(억 달러)	구매력평가(PPP) GNI(억달러)	1인당 GNI (US$)		평균성장률 (2003~2007)
				시장환율	PPP	
인도	11.2 (17.0)	11,714 (2.2)	30,825 (4.7)	1,041	2,740	8.9
중국	13.2 (19.9)	32,298 (5.9)	71,505 (10.9)	2,449	5,420	11.0
미국	3.0 (4.6)	138,272 (25.4)	138,272 (21.0)	45,842	45,840	2.8
러시아	1.4 (2.1)	12,585 (2.3)	20,364 (3.1)	8,856	14,330	7.3
세계	66.1 (100.0)	544,124 (100.0)	657,523 (100.0)	8,231	9,947	3.6

자료: World Bank

□ 인도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한국의 對인도 수출 및 직접투자 추이

<한국의 對인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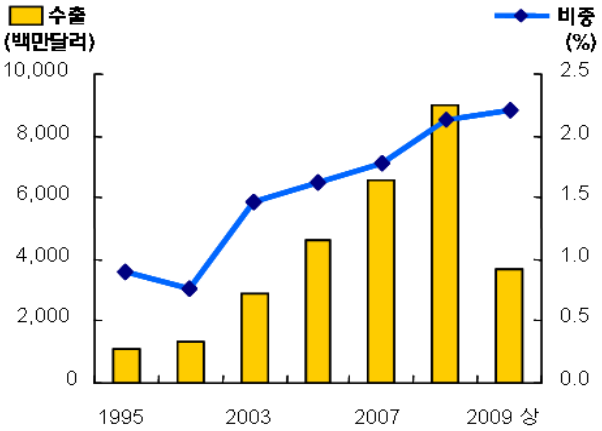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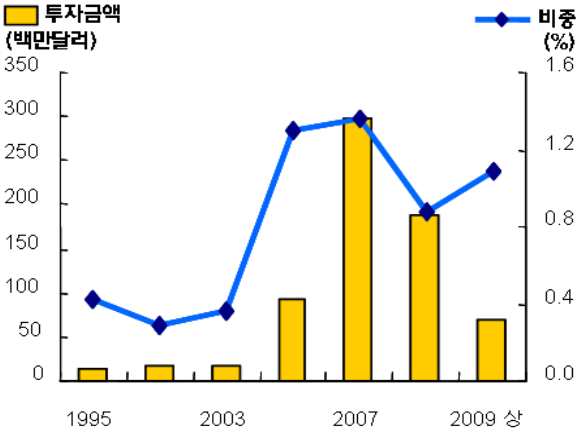

- 2000~2008년 기간 수출은 27.0%, 총수출증가율 11.9%의 2배 이상으로 비중이 0.8%에서 2.1%로 급증
  · 투자도 2000년 1500만달럴 수준에서 2008년 1.9억 달러로 급증

- 한-인도 CEPA로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대인도 사업이 가능해져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일본 및 중국도 인도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들보다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선점의 효과를 창출 가능

- 인도는 일본, 중국에게도 중요한 시장이며 특히 일본은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
  · 일본-인도 경제동반자협정(EPA)는 2008년 10월 10차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인도 수입시장에서 대폭적 시장점유율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도 인도와 FTA 추진에 노력
  · 양국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완료한 상태(2008년 10월)

- 관세율 구조면에서도 평균관세율이 공산품의 경우 11.5%로 중국 9.0%, 한국 6.6%보다 높아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

한국·인도·중국의 관세율 구조

(단위: %)

	한국		인도		중국	
	전체	공산품	전체	공산품	전체	공산품
WTO 양허율	94.6	93.9	73.8	69.8	100	100
단순평균관세율(MFN, 2007)	12.2	6.6	14.5	11.5	9.9	9.0
섬유	9.1		20.9		9.7	
의류	12.6		22.2		16.0	
비전기기기	6.0		7.0		8.3	
전기기기	6.2		6.6		9.0	
수송기기	5.5		20.8		11.5	
기타제조	6.7		8.7		12.2	

자료: WTO

Ⅱ. CEPA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주요 내용

한국의 수출액 38.4%, 수입액 63%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

□ 금액기준으로 한국의 對인도 수출액 중 38.4%(15억 달러), 수입액 중 63.0%(17억 달러)가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혜택

- 품목수 기준으로는 수출품목의 3.9%(202개), 수입품목의 60.6%(6,824개)가 발효 즉시 관세철폐

- 5년 또는 8년 안에 한국의 수출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537개 품목(67.6%), 금액으로는 14억 달러(36.0%)
  · 한국의 수입품목 중 5년 또는 8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360개 품목(28.0%), 금액으로는 4억 달러(21.7%)

양국 상품 양허 결과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한국측 양허			
	품목수 (6단위)	비중 (%)	수입액 (백만불)	비중 (%)	품목수 (10단위)	비중 (%)	수입액 (백만불)	비중 (%)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9,984	88.6	1,679	84.7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6,824	60.6	1,248	63.0
5년철폐	180	3.4	560	14.0	2,310	20.5	205	10.3
8년철폐	3,357	64.2	886	22.1	850	7.5	226	11.4
8년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34	0.3	3	0.2
8/10년내 50% 감축*	261	5.0	96	2.4	478	4.2	94	4.8
양허제외	768	14.7	580	14.5	765	6.8	205	10.3
전체합계	5,227	100.0	4,001	100.0	11,261	100.0	1,981	100.0

주: * 인도는 10년내 50% 감축, 한국은 8년내 50% 감축
자료: 외교통상부, (2009. 8. 6) “한-인도 CEPA 협상결과”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8개, 수입품목 중 7개에 대해 관세 철폐

□ 한국의 10대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 중 '자동차 기타 부분품'과 경유(제트유)를 제외한 8개 품목은 즉시 또는 8년 내 철폐

- 2008년 기준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기타 부분품'(11억 달러, 전체 대비 12.6%)의 경우 현행 12.5% 관세를 8년 내 1~5%로 감축
  - 3위 수출품인 '무선전화기'의 경우 이미 관세가 없으므로 혜택이 없으나, 9위 '기타가정용 전자제품'[2]의 경우 현행 12.5% 관세가 즉시 철폐

- 수입품목 중 1위 품목인 '나프타'(39억 달러, 전체 대비 59.1%)의 경우 현행 1%의 관세율을 즉시 철폐

주요 10대 수출품목의 관세인하 내역

	대인도 주요 수출품					대인도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인도 관세율	인도 양허안	'08 수출액		품목명 (HS 10단위)	한국 관세율	한국 양허안	'08 수입액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8년내 1-5%로	1,131	(12.6)	나프타	1	즉시철폐	3,889	(59.1)
2	경유(제트유)	10	10년내 50%감축	769	(8.6)	합금철 (페로크롬)	3	즉시철폐	201	(3.1)
3	무선전화기	0	즉시철폐	499	(5.6)	박류 (대두유)	1.8	즉시철폐	173	(2.6)
4	선박(탱커)	12.5	8년철폐	430	(4.8)	제강용의 비합금선철	2	즉시철폐	124	(1.9)
5	유선전화기 부분품	0	즉시철폐	248	(2.8)	박류(유채)	0	즉시철폐	119	(1.8)
6	철및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철폐	208	(2.3)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7	신문용지	12.5	5년철폐	172	(1.9)	기초유분 (부타디엔)	0	즉시철폐	91	(1.4)
8	철및비합금강 냉연강판	5	5년철폐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기타가정용전자	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0	선박(화물선)	12.5	8년철폐	133	(1.5)	합금철 (페로실리코 망간)	8	8년철폐	57	(0.9)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4,836	(73.5)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자료: 외교통상부, (2009. 8. 6) "한-인도 CEPA 협상결과"

2) 주로 컴퓨터 기기, 팩시밀리 등이 포함되며, 냉장고, 컬러TV의 경우는 8~10년 내 50%가 감축

□ 향후 수출잠재력이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양허에 포함시키고,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또는 낮은 수준에서 개방

-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관세 인하 및 철폐에 포함
  ·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 8년내 1-5%로 인하),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 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 철폐)

-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보호 확보
  · 양국이 공히 민감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 피해 발생을 방지

- 전반적으로는 인도의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혜택은 클 것으로 예상
  · 07년 기준 비농산물(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인도 평균 관세율은 11.5%, 우리는 6.6% (World tariff profiles, WTO)

인도는 금융, 통신, 건설 등을 개방하고 한국은 인력시장을 개방

□ 인도의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문화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기여할 전망

-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에서 개방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한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 지금까지 한국계 은행으로는 신한은행의 뭄바이, 델리지점 두개만 존재, 신규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도정부의 허가를 얻기에는 어려움 상존

□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했으나, 주로 한국시장의 개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방
  ·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미양허

양국의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즉시철폐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축전기, 팩시밀리, 소가죽 등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폴리카보네이트,
5년철폐	신문용지, 합성고무(SBR), 초음파 영상진단기, 폴리카보네이트 TV영상모니터, 형광램프 등	윤활유,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대리석,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유리 비드, 살균제 등
8년철폐	탱커(선박), 볼베어링, 건설중장비 냉연 및 열연강판 등	기타 항생물질, 산양 가죽, 유박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엑스선관 등
8년내 1~5%로 인하	디젤엔진,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파라크실렌, 자동차 카스테레오 등	캐슈넛, 강황, 자동차 휘발유, 화강암 등
8/10년내 50% 감축	기어박스, 접착제, 살충제, 냉장고, 컬러TV 등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 승용차, 페놀, 마이크로웨이브 등	소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유, 경유, 일부 순면사 등

자료: 외교통상부, (2009. 8. 6) “한-인도 CEPA 협상결과”

투자자 보호 강화

□ 인도의 FTA 협상 중 처음으로 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를 한국과 합의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 Negative 방식의 개방은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정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기업의 투자를 허용
  ·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화학제품, 금속 및 비금속광물제품, 기계, 자동차 등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 이와 관련 인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의 효과적 보호장치 마련
  · 투자자산의 간접수용[3] 금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4]의 적용대상 확대 등

2. 평가: 개방과 자유화 폭은 미흡

□ 한-인도 CEPA는 인도의 발전 단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산품의 양허 및 관세인하 속도에서 같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더딤

- 인도의 경우 일반품목(관세철폐 대상품목)비율이 71.5%이지만 아세안 선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일반품목 비율이 90.0% 이상

- 양허제외 품목도 아세안은 최종적으로 최대 40개 품목에 불과하지만 인도는 768개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

-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속도에서도 아세안은 2006년 협상타결시점에서 5년 이내인 2010년까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만 인도는 5년내 철폐비율이 철폐대상 품목의 10.2% 수준

한국의 인도 및 아세안 관세양허 비교

	인도		아세안	
	품목기준	금액기준	품목기준	금액기준
일반품목	71.5%	74.5%	90% 이상	90% 이상
민감품목	28.5%	25.5%	10% 이내	10% 이내
- 양허제외	14.7%(768품목)	14.5%	최대 40품목	

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인도의 경우 일반 및 민감품목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으나 아세안을 기준으로 할 때 관세철폐품목은 일반품목이며 기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자료: 외교통상부

3) 간접수용이란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로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조치(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
4)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 금융 및 서비스 분야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님

- 한국의 경우 인도에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은행지점 개설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바 있으나 인도는 이미 싱가포르 3개 은행에 대해 인도에서의 은행업무 일부를 허용
  · 현재 신한은행만이 2개 지점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외환, 수출입, 우리, 하나은행은 사무소만 개설한 상태

- 일본은 인도와의 FTA 협상에서 일본은행이 지점 및 자동인출기(ATM)기를 현지은행과 동일한 자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Qualified Full Bank 자격)하고 있음

Ⅲ. 예상 경제효과

교역 증대와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

□ 對인도 수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08년 한국의 1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는 선박류로서 5.6억 달러를 기록
  · 정보통신기기로 제로 관세율인 무선전화기 등을 제외하면 주요수출상품이 모두 관세인하품목

- 석유제품,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수출증가 예상
  · CEPA로 인한 수출증가는 1억 7700만 달러(KIET 추정 결과)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2004		2006		2008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무선전화기	765	무선전화기	984	자동차부품	1,312	49.2	14.6
자동차부품	373	자동차부품	626	선박	564	194.4	6.3
선박	166	윤활유	281	무선전화기	499	143.2	5.6
합성수지	128	합성수지	183	윤활유	475	52.5	5.3
해양구조물	122	열연강판	176	합성수지	360	59.2	4.0
윤활유	113	기타기계류	147	열연강판	359	28.9	4.0
냉연강판	95	경유	142	경유	281	56.1	3.1
음극선관	75	냉연강판	140	냉연강판	278	46.7	3.1
펌프	72	무선통신기기부품	134	무선통신기기부품	273	70.4	3.0
컬러TV	57	가열난방기	128	합성고무	175	52.1	1.9
10대 품목 비중(%)	54.1		53.2		51.0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의 경우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전망

- 한국의 대인도 수입 최대품목은 나프타로서 2008년 총수입의 59.1%인 38.9억 달러이지만 나프타의 수입관세율은 1%에 불과
  · 수입증가는 3700만 달러에 불과할 전망(KIET 추정)

- 참깨, 사료용 옥수수 등 농산물 및 순면사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함으로써 수입증대 효과는 없을 전망

-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대우 받기로 함으로써 개성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및 남북문제의 개선도 가능

□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전망

- 인도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재, 부품, 소재의 수입비율이 높으며 한국에게는 기회

- 대신 수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할 것임

□ 한국-인도 CEPA로 한국산 부품의 관세가 인하되면 현지 진출 제조업체의 경쟁력 증가

- 인도에 진출한 일본의 조립업체들은 부품과 소재를 인도-태국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태국에 있는 일본업체로부터 무관세로 조달

- 현지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및 LG 전자 등이 한국에서 조달하는 부품 및 소재가격의 하락으로 경쟁력이 향상
  · 전자업체들은 TV용 LCD패널과 CRT, 컬러강판 등 고급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

□ 양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개시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합의

- 인도는 한국상품에 대한 세계 최고의 수입 규제 국가기 때문에 한-인도 CEPA로 인해 투명성 제고
  · 2009년 6월 현재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 7건 등으로 상당히 많음

- 인도가 對한국 상품에 대한 보호주의는 다소 낮아질 전망

인도의 대한 수입 규제 현황('09년 6월 기준)

규제 형태	품목	제소 연도	규제 확정일
반덤핑관세	NBR 합성수지	'96	'97.7
	아크릴단 섬유	'96	'97.10
	SBR(합성고무)	'98	'99.6
	시안화나트륨	'99	'00.3
	PIB(Poly Iso Butylene)	'01	'01.12
	가성소다	'01	'03.8
	수황화나트륨	'02	'03.12
	폴리올	'02	'04.1
	탄산칼륨	'02	'03.7
	염화메틸렌	'03	'04.8
	PG	'03	'04.8
	폴리에스터사(PFY)	'05	'07.1
	나일론사(NFY)	'05	
	PVC	'06	'07.12
	PS Plates	'06	'07.9
	아세톤	'07	'08.5
	페놀	'07	'08.1
	Rubber Chemicals	'07	
	CD-R	'07	
	TV 음극선관	'07	
	과산화수소	'07	
긴급수입제한	녹말류	'04	'05.2
세이프가드	무스프탈산	'08	조사 개시
	선형알킬빈젠	'08	
	옥소 알콜	'09	
	아크릴섬유	'09	
	열간압열코일 및 판재류	'09	
	단순파티클보드	'09	
	코팅종이/보드	'09	

자료: 무역협회

제조업 직접투자 확대 전망

□ 인도는 투자잠재력이 높지만 실제 투자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은 국가

- 인도의 시장잠재력, 저렴한 생산비용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향은 높았지만 실제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했음

- 매년 투자신고건수 대비 신규법인건수는 전체의 40% 미만이며, 따라서 많은 투자가 기존업체에 투자

□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제도적으로 투자보호제도의 강화와 기업인들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져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현재 인도의 규제와 투자보호제도의 미흡으로 투자의향은 높지만 실행률이 낮은 대인도 투자에 있어 투자 실행률이 상승

- 한국-인도 CEPA로 한국에 대한 국가 및 상품인지도와 이미지가 개선되어 현지기업인과의 협력사업이 용이해질 전망

- 투자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영상서비스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

한국의 대인도 투자 누계실적(2009년 6월 기준)

(단위: 백만달러)

업종대분류	신고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비중
계	1,136	2,389	470	1,610	100.0
제조업	765	1,953	295	1,314	81.6
건설업	58	34	31	26	1.6
금융 및 보험업	11	126	4	83	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	35	13	17	1.1
기타	275	241	127	169	10.5

자료: 수출입은행

□ 현지에 기진출한 주요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면서 추가적인 투자도 증가할 전망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원가경쟁력의 상승은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시장에 대한 교두보로서의 인도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

- 현지진출 조립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국 부품업체들의 현지 진출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해지면서 동반진출이 증가할 가능성

단기보다 장기적이고 비가시적 효과가 더 커

□ 관세인하 속도가 더디면서 수출증대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

- 한국의 주요수출제품이 관세인하 대상이지만 인하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대신 인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CEPA로 인한 한국기업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임

□ 한-인도 CEPA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적 규제와 차별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

- 인도는 개방과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규제가 많은 나라로서 기업환경은 열위
  · 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업환경 순위에서 인도는 세계 122위이며 한국은 23위

- 비제도적인 행정 관료주의, 문화적 배타성 등으로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한국이 인도와 CEP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기업 활동에 대한 인도 정부의 비가시적인 규제와 행정관료주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임

인도·중국·한국의 사업 환경 평가(2008년 1월 기준)

		인도	중국	한국
사업활동 용이성 순위		122	83	23
사업 착수	사업착수 필요한 절차의 수	13	14	10
	사업착수에 필요한 날자	30	40	17
	사업착수 용이성 순위	121	151	126
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 수	6	4	7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날자	45	29	11
	부동산등기 용이성 순위	105	30	67
건설 허가	건설허가 필요한 절차 수	20	37	13
	건설허가 획득에 필요한 날자	224	336	34
	건설허가 획득의 용이성	136	176	23
상업계약의 강제이행	채무강제 이행에 필요한 절차 수	46	34	35
	채무강제 이행에 필요한 날자	1,420	406	230
	상업계약 강제 이행 용이성 순위	180	18	8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9

Ⅳ. 시사점 및 활용방안

신흥국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

□ 한국에게 있어 인도와의 CEPA 체결은 BRICs 국가 중 최초의 FTA 체결이며,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

- 11.5억의 인구와 1,000달러 정도의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중국보다 더 큰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한국과 산업구조면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일본보다 앞서 CEPA를 체결하게 된 것은 시장선점의 효과를 가짐
  · 인도는 현재 일본, EU, 중국(공동연구 단계)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인 바, 한국이 이들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장선점효과

□ 업종별로는 CEPA의 체결로 한국의 전자, 자동차 기업들과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들의 한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5)]

- 인도내 삼성전자, LG전자는 CEPA 체결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가 감소해 원가 경쟁력 제고 가능
  · 인도 가전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기업은 전체 부품의 25~30%를 현재 5~10% 수입관세를 지불하며 한국에서 수입

- 현대자동차의 경우 중/대형차 부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 향후 중형차 위주의 현지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효과
  · 현재 인도내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1위 마루티스즈키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은 기회

- 인도의 TCS, Wipro, Infosis 등 BPO 기업들은 서비스 수출 장벽의 완화로 對한국 BPO 서비스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5) KOTRA, ‘CEPA 타결 관련 현지 한국기업 대상 survey 결과’, 2008년 9월 실시.

선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인도의 개방 폭이 제한적이고 관세인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인도는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인도 CEPA보다는 인도-일본 FTA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 인도는 일본의 의약품 시장, 인력 시장, 섬유 등 경공업 시장에 관심

-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인도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관심

- 일본 및 중국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 인도시장에서 한국기업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필요

□ 현재 인도의 개방이 만족할 정도는 안 되지만 "빗장을 푼" 형태이므로 한국은 선발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관세인하 폭이 적고 인하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후발국과 FTA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인도 CEPA를 통한 우월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음

- 다른 나라와 인도와 FTA를 체결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한국기업은 대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할 필요

- 정부도 다른 나라와 인도의 FTA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개선시켜야 함
  · 협상결과에서도 이와 관련 관세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어 금번 협상결과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의 추후 개선이 가능하도록 명시

보완적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전체적 시너지발휘 가능

□ 한국과의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주력제조업분야인 전기전자와 운송기계 산업에서는 인도의 산업비중이 높지 않고, IT 서비스, 제약 등이 발달되어 있어 상호 보완적임
  · 상장기업의 전지·전자와 운송·기계산업 소속 기업들의 매출액 비중이 한국은 33%인 반면, 인도는 9%에 불과

- 석유화학이나 제철 등의 산업에서는 향후 경합이 예상되며, 사업서비스분야에는 인도업체의 매출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한국으로의 진출이 예상

한국과 인도의 산업별 매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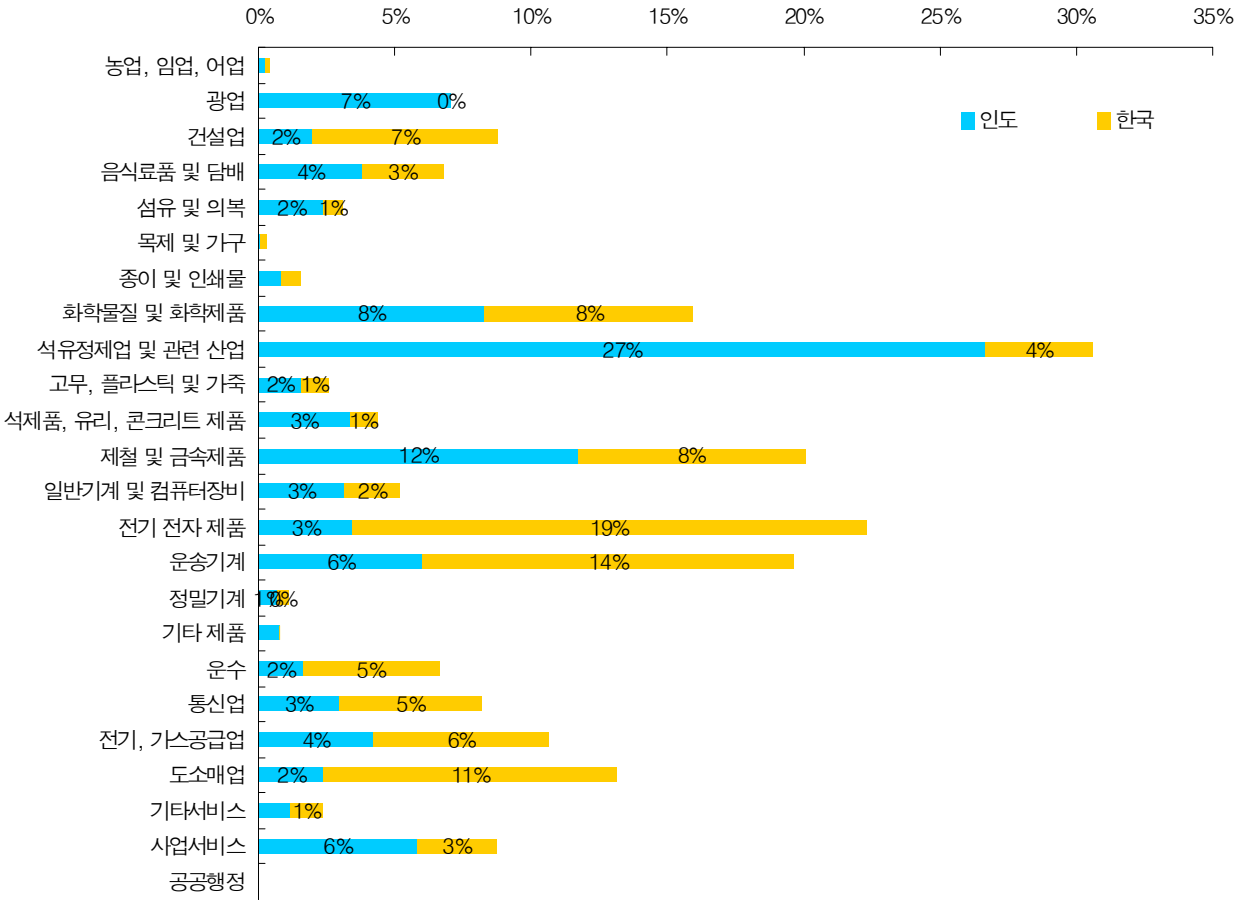

주: 한국과 인도의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매출합계의 비율을 구함
자료: 한국은 KIS DB, 인도는 Tomson One Banker DB

CEPA를 활용한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의 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

- 또한 고부가가치 부품을 현지업체에 공급하는 전략이나, 신규 시장개척 또한 가능
  - · 인도 현지 업체들의 국내시장기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중간재, 설비 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유망업종을 선별해서 타겟팅 공급전략 또한 필요

한-인도 CEPA 이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분야	품목	선정사유	진출방안
기계류	제약기계	산업 성장에 따른 성장	· 부품수입선 다변화 및 가격경쟁력 제고 · 경쟁제품군을 중고급 제품군으로 특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 성장에 수반한 수요 증대	· 신속한 딜리버리 · 현지 에이전트 선정을 통한 유통경쟁력 확보
	산업용 밸브	제조업 성장에 수반한 수요 증대	· 국제인증 획득을 통한 품질 이미지 제고
	건설장비	건설수요 급증	· 품질개선 및 A/S 관리 등으로 경쟁력 제고 · 프로젝트 수주기업과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는 판매 에이전트의 선정
철강 및 비철금속류	철강(열연·냉연·도금강판)	각종 건설수요 증가로 인한 성장세 지속	· 고급제품군에서 품질경쟁력을 강화 · 무역구제조치와 잦은 제도변화에 주의
	아연	한국산의 높은 경쟁력	· 해당 산업계의 보호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물량 조절이 필요
전기전자	도난 및 화재경보기	시장확대 추세, 고관세(10%) 품목	· UL 등 국제인증 획득 · A/S망을 갖춘 딜러 또는 에이전트 선정
자동차 부품	차량용 디젤엔진	한국기업의 대인도 수출 주요품목	· 장기적 차원의 마케팅 전략 구사 · 인도 현지 완성차업계 등으로 공급처 다양화
화학 제품	타이어	OEM 및 교체수요를 포함 수요 확대 전망	· 현지 딜러망 확충노력 강화 · A/S 타이어 시장 확대도 동시 검토
	페인트	인프라개발 촉진 및 주택경기 호조	· 건축용 페인트 수요에 맞추어 시장을 개발, · 기존 딜러망 보유 업체를 활용하여 시장 접근

자료: KOTRA

수출중심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Win-Win' 경제구조 구축 필요

□ 제3국 수출을 위한 인도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해 인도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한국기업들의 성장과 수익을 도모할 필요

- 인도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중요한 경제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음
  - · 인도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77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1,131억 달러(수출대비 60.3%)로 폭증

- 한국-인도 CEPA가 인도측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인도가 경계할 전망

- 인도의 저임노동력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엔지니어링 등의 직접투자를 장려
  - ·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인도의 수출 창출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인도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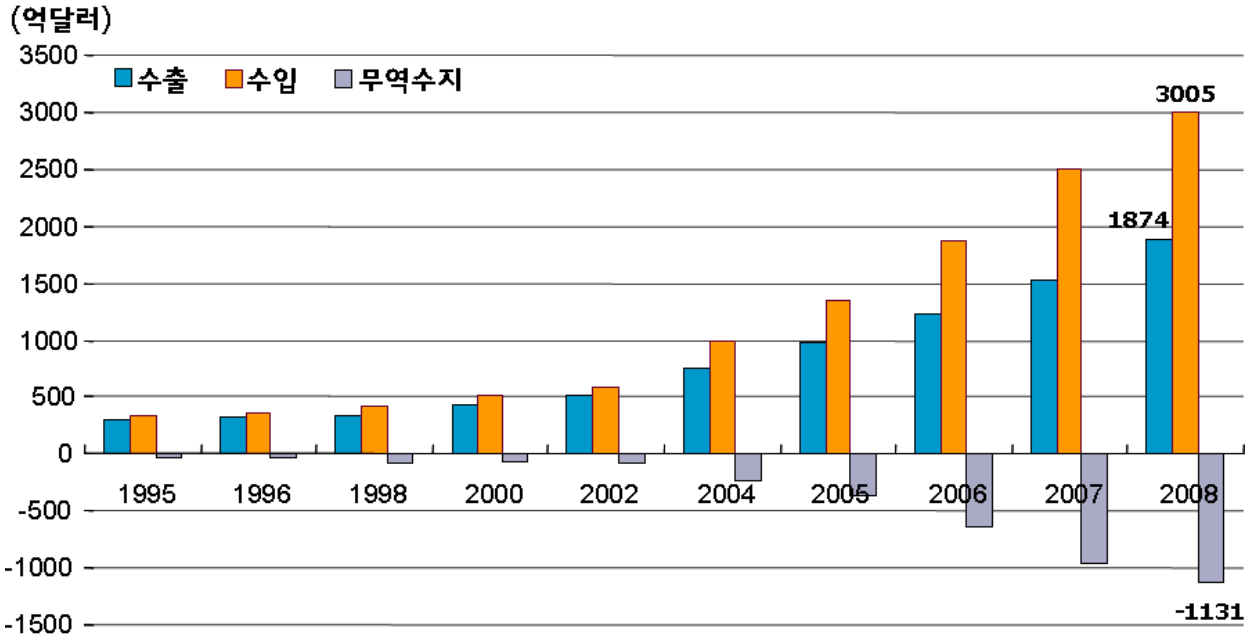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